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영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다양한 형태로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(안 제2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'22.0.00. ~ '22.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며, 이하 “협동조합”이라 한다)을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며, 이하 “협동조합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조(장애인기업의 정의) ①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”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1. · 2. (생략) 3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며, 이하 “협동조합”이라 한다) 가. ~ 다. (생략)	제2조(장애인기업의 정의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며, 이하 “협동조합”이라 한다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	
연 락 처	044-204-7832